

학 칙 시 행 세 칙

[2017.09.01 개정]

수 원 대 학 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수원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학칙시행 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제2조(입학의 지원절차) ①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구비서류에 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구비서류는 모집시 총장이 이를 정하여 공고한다.

③입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와 납부한 전형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3조(입학의 절차) 입학의 허가를 받은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 납부와 수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입학의 취소) ①입학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의 허가를 취소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입학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 한 때

2. 학칙 제14조 또는 제15조에 정한 자격에 미달한 것이 확인된 때

②입학이 취소된 자의 학적 취득은 무효로 하며, 입학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와 납부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재입학) ①재입학원(소정서식)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야 한다.

1. 학칙 제31조 및 제32조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2. 학칙 제 32조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해당학과 교수에 의해 학업 성취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재입학원의 제출기간은 개강일 이전 소정의 기일 이내로 한다.

③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매학기 개강 전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재입학원서는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소속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재입학금과 납입금을 납입한 후 학적과에 제출한다.

⑤재입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이때 제적 이전의 학업성적을 고려하여 재입학 신청학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⑥재입학은 재입학 직전학기 3,4학년 제적자 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⑦재입학자는 제적 전의 모든 학적사항을 승계한다.

⑧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완납하여야 한다.

⑨성적경고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당해 학기 성적이 성적경고시 제적처리 된다.

제6조(편입학) ①지원 자격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이며, 추후 지원 자격 미달로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

②전적대학의 학과(전공)와 상관없이 모든 학과에 지원 가능하다.

③편입학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편입학 허가 후 재학 중이더라도 편입학 허가를 취소하고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④접수된 서류는 접수를 취소하거나 내용을 정정하지 못하며, 전형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⑤타 대학교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본 대학교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전적 대학교를 자퇴해야 한다.

⑥3학년 편입을 원칙으로 하며 편입학한 학생(전문대학 졸업자, 4년제 대학 2학년 수료자 및 3학년 1학기 수료자, 학사편입학)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기는 최소 2년(4학기)이다. 단, 재외국민전형은 2학년 편입이 가능하다.

⑦편입생의 인정학점은 전적대학 성적의 과목인정이 아니라 ‘학점에 대한 인정’이며 소속학과와 심사를 통하여 인정된다.

⑧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장 등록

제7조(등록) 수원대학교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필함으로써 해당 학기의 유효한 학생자격을 유지한다. 등록절차는 소정의 납입금을 지정장소에 납부함으로써 완료되며, 미 등록시는 제적된다.

제8조(등록절차) ①학칙 제24조(등록)과 관련하여 학생은 학기 개시일 이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교무입학처장은 매 학기 초 추가등록 기간을 둘 수 있다.

②등록은 본교에서 설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납부처에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장학생과 기타 학비감면을 받은 학생도 소정의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미등록 시는 제적된다.

③등록은 최소 8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조기졸업자는 예외로 한다.

④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수강학점	수업료
3학점이하	당해학기 등록금의 1/6
4학점이상 ~ 6학점이하	당해학기 등록금의 1/3
7학점이상 ~ 9학점이하	당해학기 등록금의 1/2
10학점이상	전액

⑤집중학기 및 장애학생 중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4항의 학점당 등록금 납입기준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제9조(납입금의 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학기에 납입한 등록금을 복학학기로 대체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학기 개시일로부터 학사일 2/3시점 일반휴학을 신청하여 성적을 인정받지 않은 경우
2. 군입대 휴학으로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받지 않는 경우

제4장 교육과정, 수업, 수강신청

제10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본교 학칙에 의거하여 편성된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을 준용한다.

②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에 따로 정한다.

제11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온라인 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② 수업시간의 단위는 교시로 표시하며 1교시 당 수업시간은 50분, 야간은 45분으로 한다.

제12조(수강신청 의무) ① 재학생은 매학기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학기에 성적경고를 부여하며,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③ 수강자가 아닌 타인에 의한 신청은 불허하며, 대리 수강신청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강자 본인에게 있다.

④ 복학 및 재입학 신청자의 수강신청은 복학 및 재입학이 허가된 후 수강신청 기간 중에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⑤ 수강자는 본인의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수강신청절차) 수강신청은 매 학기 지정된 기일 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수업계획서 작성 및 제재조치) ① 교원은 매 학기 수강신청 개시일 1주일이전까지 담당 과목의 강의 개요, 목표, 내용 등이 기재된 수업계획서를 학교 전산망을 통해 교원이 직접 입력한다.

② 수업계획서 미작성 및 내용이 부실하거나 허위 또는 본인 외 대리인 작성, 수업계획과 다른 교과운영 시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한다.

제15조(수강지도) ① 학과(부)장은 소속 학생들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과목 이수 사항을 수강지도 한다.

② 학부로 입학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세부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강제할 수 없다.

제16조(수강신청학점) 매 학기 수강신청학점은 15학점 이상 21학점까지로 하며, 학생은 학점 취득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재학중 전(前)학기 15학점 이상 수강하고 성적의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자는 3학점을 초과하여 신청 할 수 있다.

2. 4학년은 12학점 이상을 수강신청 함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학기에는 예외로 한다.

3. 수강신청은 제한학점이 초과될 경우 초과된 학점만큼 임의로 무효처리 한다.

4.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그 성적 및 학점을 무효로 한다.

5. 수강신청은 반드시 시간표에 배정된 대로 하여야 하며, 시간표상 중복된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6. 등록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미수강자는 성적경고 처리한다.

7. 계절 학기에 수강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계절학기당 9학점 이내로 한다.

8. 최저 수강신청 기준은 1과목 이상으로 한다.

제17조(수강신청변경) 수강신청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수강과목의 시간변경, 분반, 폐강으로 인하여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변경하여야 한다.

제18조(수강신청과목의 포기) 이미 수강신청 한 과목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포기하여야 한다.

1. 포기한 나머지 수강과목의 총 학점 수는 본 세칙 제16조에 의한다.
2. 포기 가능한 과목의 수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제19조(교차수강) ①주간, 야간의 교차 수강신청을 불허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각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선택교양, 교직, 군사학 교과목에 한하여 매학기 교차 수강신청을 허용한다. 단, 기초교양 교과목의 경우 야간 학과(부)생이 재수강을 위한 교차 수강은 허용됨.
 2. 부/복수/다/연계/융복합/학생설계전공 이수를 승인받은 자가 부/복수/다/연계/융복합/학생설계전공의 교과목 이수를 목적으로 한 교차수강은 허용한다.
 3. 야간학과가 주간 학과로 편제가 변경된 경우 교차수강을 허용한다.
 4. 재학중인 야간학과 학생 중 야간학과 폐과로 개설되지 않는 전공필수, 계열기초 미이수자는 교차수강을 허용 하며, 교차수강 학점 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② 허용되지 아니한 교과목을 교차수강하거나 교차수강 허용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였을 경우 초과한 학점만큼 무효로 한다.

제20조(수강신청 제한사항) ① 강의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수강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그 인원 범위내에서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본 대학에 개설되는 모든 강의는 학년에 상관없이 수강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특성 또는 수업진행 특성으로 인해 수강자를 특별히 지정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단, 수강신청을 제한하는 경우 교무입학처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선수과목을 요하는 교과목의 경우 그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의 수강신청을 해당 교과목의 담당 교원이 불허할 수 있다.
 2. 수강능력을 고려하여 편성된 교과목의 경우 반드시 지정된 반에서 수강하여야 한다.
 3. 수강대상 학과(부) 또는 학년이 지정되어 있는 교과목의 경우 해당 학과(부)생 또는 학년에 게 수강신청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 ④ 선택교양 영역의 수강신청은 매학기 동일 영역 내에서 하나의 교과에 대한 수강신청이 허용 된다.
- ⑤ 온라인(동영상) 강의는 수강학년 및 신청 과목 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제21조(전공교과의 수강신청) ① 전공교과는 소속 학과(부)에 개설된 교과목의 이수만을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목명이 동일하더라도 타 전공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한 경우 졸업심사시 일반선택 학점으로 처리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IT대학의 학장이 인정하는 학과(부)의 전공교과는 상호 전공선택으로 인정한다. 단, 전공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소속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의 이수만을 인정한다.

③ 유사전공으로 지정된 과목은 전공선택 학점으로만 인정한다.

제22조(교직교과의 수강신청) ① 2학년으로 교직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직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② 교직과정 이수대상자가 아닌 학생은 수강신청 시 수강반은 수강대상 학과 중 기타반으로 수강하여야 한다.

③ 교직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직과정이수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23조(수강신청 유의사항) ① 수강신청된 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교과목의 성적은 F가 된다.

②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 및 학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외부 시설을 이용하는 교과목은 외부시설 이용료(실비)를 수강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교양선택에 있는 일부 교과목은 학기중에 일부 이론수업을 실시하고 방학 중에 해당과목의 실기장에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본인의 비밀번호(PASSWORD) 관리를 철저히 하여 타인에게 도용되어 수강과목 삭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4조(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① 수강자는 소정의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내에 본인의 수강신청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의해 변경처리 하여야 한다.

② 최종 수강신청의 변경기간 이후에는 수강신청 내용의 변경(추가, 삭제, 변경 등)을 불허한다. 다만, 폐강 등 교무입학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5조(기타 수강신청 유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매학기 강의시간표상의 수강신청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수강신청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6조(계절학기 수업) ① 계절학기 수업은 <계절학기 운영규정>에 따라 개설한다.

② 계절학기 수업으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9학점 이내이며, 졸업 때까지 8회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편입학자의 수강신청 횟수는 신입학자의 1/2 이내로 한다.

③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정규학기 성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총 취득학점 및 성적에만 반영 한다.

④ 국제협력처 및 각 단과대학등에서 방학 중 진행하는 전공연수, 어학연수, 현장연수 활동은 2항에서 정한 제한범위에서 인정이 가능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장 재수강, 학점포기

제27조(재수강) ① 이미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과목에 대하여 해당과목 또는 대체과목을 재수강하여 새로운 성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이미 취득한 과목의 성적등급이 C+이하일 경우 재수강을 허용한다.

또한 재수강하는 과목의 성적등급은 최대 B+이하로 제한한다.

② 과목이 폐지된 경우에는 대체과목으로 재수강을 하여야 한다.

③ 재수강의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하며, 최대 수강신청 학점인 21학점 이내에서 재수강 하여야 한다.

④ 재수강 이전에 받은 성적에 대한 학사경고는 유효하다.

⑤ 교과목을 재수강 하였을 때 학적부 기록에 “재수강” 표시를 하고 학점계산에서 제외한다.

⑥ 기존의 성적과 재수강 성적을 비교하여 상위의 과목 성적을 인정하고 동점이나 하위성적의 과목은 재수강학기 일정시점 이후에 재수강삭제표시 처리한다.

제28조(학점포기) ① 교육과정에서 폐지된 과목 중 동일명칭의 교과목이 없거나 또는 대체과목이 지정되지 않아 성적 상승을 위한 재수강이 불가능한 과목에 한하여 기 취득한 성적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졸업학기 수강신청 기간 중에 1회에 한하여 최대 10학점까지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②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점포기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29조(학점취득의 포기) 등록한 학기에 이유 없이 학점을 취득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당해학기의 등록횟수로 간주하며, 성적경고의 대상이 된다.

제30조(타 대학 취득학점 인정) ① 국내·외의 타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교무입학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1학기 당 21학점까지 인정한다.

② 국내·외의 타 대학교에서 일정기간 수학하여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대학교의 승인서를 본교에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총장이 이를 승인한다.

③ 국외대학교에서 일정기간 수학한 후,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 재학중의 성적이 평균 C+(2.50) 이상이어야 한다.

④ 총장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기간동안 본교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타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학기종료 30일 이전까지 소정의 절차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외국대학(교) 학생교류수강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및 <외국대학교환학생 및 연수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6장 학점취득, 학점의 인정

제31조(학점취득방법) 학점은 정규 학기 중 교과목을 수강하여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절학기 과목수강,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 사회봉사 학점 인정, 학점인정 인턴십, 수시입학생 특별교육, 별도로 지정된 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다.

제32조(학점의 인정) ① D₀ 등급 이상과 P등급을 급제로 하여 취득 학점으로 인정하며, F등급은 낙제로 하여 학점 이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학점의 인정 시기는 학기말로 한다.

② 낙제된 과목이 필수과목일 경우 해당과목 또는 대체과목으로 반드시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선택과목일 경우에는 다른 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③ 계절 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당해 학기 성적에 포함하지 않으며, 총 취득학점 및 성적에만 반영한다.

④ 전 조의 학점취득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외인턴십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산업체 현장실습 규정>, <ICT 학점연계 인턴십 규정>, <국내대학간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 <창업대체학점제 운영>, <특별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학교육혁신센터 현장실습 규정>, <사회봉사활동 학점취득 규정>등에 따로 정한다.

제7장 시험과 성적평가

- 제33조(시험)** ① 모든 교과목은 매학기 중간과 기말에 정기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시험을 부과할 수 있으며, 교과목에 따라 기말시험만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험방법은 필기에 의한다. 다만 담당교수의 의견에 따라 구술, 논문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및 시험 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평가 방법은 따로 정한다.
- ④ 출결현황은 성적처리시 일정부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반영 비율은 총점의 1/4로 한다.
- ⑤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에 성적평가 비중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4조(성적평가 및 성적분포) ①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적용하며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 원칙에 준한다. 다만, 교무입학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성 적 등 급		A ⁺ (95 ~ 100)	B ⁺ (85 ~ 89)	C ⁺ (75 ~ 79)	D ⁺ (65 ~ 69)	비 고
		A ⁰ (90 ~ 94)	B ⁰ (80 ~ 84)	C ⁰ (70 ~ 74)	D ⁰ (60 ~ 64) F (59 이하)	
이 수 구분별 비 율	21명이상	25%이내	45%이내	30%이상		A,B등급의 동점자 처리 원칙 1. 기말고사 2. 중간고사 3. 출 석
	20명이하	30%이내	40%이내	30%이상		

- ② 교과목 성질에 따라 정기시험을 보고서 제출 또는 실기 발표로써 대체한 경우에는 그 성적을 시험 성적에 반영한다.
- ③ 당해 학기에 1회의 시험만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시험만으로 시험성적을 평가한다.
- ④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 가. 성적평가 인원 10명이하의 실험/실습 교과목.
 - 나. 특수교과목(군사학과목)
 - 다. 교직과목(교육실습, 교직실무)
 - 라. 학외 기관에서 성적을 평가하는 과목 및 소인원 실험, 실습, 실기과목(음악대학 전공실기, 간호학과 간호실습 등)
 - 마. 고급회화 교과목
 - 바. 교과목 특성상 상대평가가 불가하다고 교무입학처장이 인정한 과목
 - 사. 수강인원 전원이 국제대학 소속 외국인 학생인 과목

제35조(성적공시 및 근거자료 등) ①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학기말 시험 후 소정기간 내에 성적평가 후 공시하여야 하며 이후 성적열람 및 정정기간 내에 학생이 직접 열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열람된 성적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시 및 정정기간 중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 신청 후 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거쳐 담당교수가 직접 수정할 수 있다.
- ③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소정기간 내에 당해 학기 제출용 성적평가표는 학적과에 출석부는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를 경유하여 학적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성적산출근거자료(문제지, 답안지, 각종 과제물 등)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이의신청 및 정정) ① 성적정정기간 종료 후에는 제출된 성적을 정정할 수 없다. 다만, 기재착오(성적착오 또는 누락)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학기 성적표 발송후 30일 이내에 담당교수의 사유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성적산출 근거자료(문제지, 답안지, 각종과제물 등)를 첨부한 성적정정원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전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성적정정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성적의 정정을 허가한다.

제37조(군입대자의 성적) ① 중간시험에 응시한 후 군에 입대한 때에는 출석율이 3/4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중간시험 성적을 당해 학기의 성적으로 인정하되, 출석율 및 과제성적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② 군 입대 휴학 신청학기에 대한 성적을 인정받은 경우, 교과를 담당한 교수는 재학기간의 성적(중간고사, 출석, 과제, 기타평가 등)을 100%로 환산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군 입대 휴학 신청학기에 대한 성적을 인정받지 아니한 휴학자의 당해 학기 수강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된다.

제38조(성적경고) ① 당해학기 성적 평점평균1.50(D+)미만인 자 또는 F등급이 6학점 이상인 자에게는 경고를 한다.

② 재학중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미수강자도 성적경고대상자에 포함한다.

③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은 지도교수 또는 학과(부)장 상담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1회, 2회, 3회의 성적경고 횟수에 따라 교수학습개발센터 및 학생생활상담연구소등에서 운영하는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

단, 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취득학점은 제4항에 적용받지 않는다.

④ 직전학기에 성적 경고를 받은 학생의 수강신청학점은 18학점 이내로 한다.

⑤ 성적경고 자는 다음 학기 개강 전에 본인,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학적부 상벌란에 기재한다.

제39조(휴·보강 및 제재조치) ① 학장은 해당 단과대학에서 개설되는 강좌의 교강사 출·결강 및 휴·보강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단과대학 교학과는 교강사의 출·결강 및 휴·보강 현황을 종합하여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기별 동일과목의 휴·보강 3회 이상 4회 미만시 교수학습개발센터 및 학장 면담 후 그 기록을 교무입학처에 공문으로 제출한다.

④ 휴·보강 5회 이상 및 결강 1회 이상시 전임교원은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비전임교원은 임용에서 제외한다.

제40조(학생출결관리) ① 수강생의 출석관리는 강좌담당교원이 매 수업 시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업시간 시작 후 10분이 경과된 시점부터 지각으로 처리하며, 3회 지각 시 결석 1회로 간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담당교원은 장기 결석자(2주이상 연속결석자)와 면담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에게 통보한다. 지도교수는 해당학생과 상담 진행 후 학생상담 기록부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교수학습개발센터 및 학생생활상담연구소등에 의뢰하여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

④ 엄정한 출결관리를 위해 각 대학장은 해당 단과대학 소속 강좌담당교원의 출결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제41조(결석계 제출) ①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결석하였을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제출하고 담당 교강사는 이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간주 할 수 있다.

1. 징병검사 또는 예비군훈련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2.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형제자매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사유
3. 질병으로 응시 할 수 없는 자
4. 총장이 허가한 학습답사여행(교생실습 포함)을 위한 사유
5. 생리공결에 의한 사유
6. 최종학기 취업한 자
7. 기타 총장이 허가한 사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석일수가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1/3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학기 취업은 제외한다.

③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결석조치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42조(출석) 매 학기 수강과목별 총 수업시간수의 3/4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시 해당과목의 성적은 낙제로 처리된다.

제43조(인정점수) ①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학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군입대 및 병사관계자가 당해학기 수업 주 수의 3/4 이후에 휴학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 ... 입영통지서의 사본 또는 관계서류의 사본
2. 질병으로 응시할 수 없는 자 ... 진료병원의 진단서
3. 상고의 경우 ... 부고 또는 진단서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할 수 없는 경우 ... 관계 증빙서류

②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심사하여 응시하지 못한 교과목에 대하여 별도 특별시험의 시행 또는 과제물을 부과하여 인정점수를 줄 수 있다.

제44조(평균성적) 학업성적의 평점평균 산출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text{평점평균} = [(\text{각 수강신청 과목 학점 수} \times \text{취득평점}) \text{의 합}] \div \text{수강신청 총 학점 수}$$

제45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의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

1.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해당학기 성적 전부.
2.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자의 해당과목의 성적 및 그 후에 취득한 성적 전부.
3. 출석일수 미달인 자의 해당과목 성적.
4. 미등록자의 성적.
5.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의 성적.
6. 학점을 초과하여 얻은 성적.
7. 기타 부정으로 얻은 성적.

제8장 학적변동

제46조(휴학의종류)학칙 제27조에 의한 휴학은 다음 호와 같다.

1. 일반휴학 : 가정사정, 질병,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2.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 입대(자원입대를 포함)하는 경우

제47조(일반휴학) ① 일반휴학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질병, 가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
- ② 휴학원의 제출기간은 매학기 개시 전에 학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 ③ 휴학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휴학원서(소정서식) 1통
 2. 휴학사유서 1통(학기중 신청자 또는 질병 휴학자)
 3. 질병인 경우에는 2차 진료기관 발행의 4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진단서
- ④ 휴학원의 제출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의 승인을 얻어 학적과에 접수시키고 접수증을 받는다.
 2. 휴학기간 만료 후 재 휴학을 하고자 할 때의 요령은 휴학원서 제출요령과 동일하다.
- ⑤ 납입금 납부 후 휴학한 자의 납입금은 복학 해당학기로 인상 및 인하와 관계없이 이월한다.
- ⑥ 일반휴학기간 중에 입영명령서를 받은 자는 즉시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⑦ 휴학신청은 매학기 방학 중 지정된 기간에 하여야 하며, 개강이후 부터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에 일반휴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 ⑧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생은 입학한 당해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군입대하는 경우
 2. 2차 진료기관 발급의 4주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학하는 경우
- ⑨ 휴학기간은 1회에 1년(2학기)을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제48조(군입대 휴학) ① 군입대 휴학의 대상자는 입영명령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자를 말한다.

- ② 군입대 휴학 대상자는 군입영통지서(소집통지서) 발급일로부터 입영전까지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휴학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군입대 휴학원서(소정서식) 1통.
 2. 군입영통지서(원본 확인 후 반환)
- ④ 군입대 신고서를 작성하여 학과(부)장의 승인을 얻어 학적과에 접수시킨다.
- ⑤ 납입금 납부 후 군입대 휴학하는 자의 납입금은 휴학시기에 관계없이 복학 해당학기의 납입금이 인상 및 인하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다만, 정상적으로 학점을 취득하고 군입대한 경우에는 복학 해당학기의 납입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⑥ 군입대 휴학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의무복무기간 종료후 이수해야할 학기 직전까지 한다.
- ⑦ 재학중 군입대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영일 1주일 전부터 입영일 전까지 입대 휴학신청을 하고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⑧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받아 군입대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군입대 휴학으로 전환 하여야 한다. 이때 군입대 휴학으로 전환한 당해 학기의 일반휴학 기간은 휴학기간으

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 군입대 휴학을 한 후 입대가 취소(귀향)되었을 시에는 1주일 이내 귀향증명서를 지참하고 학적과에 귀향신고를 하고, 일반휴학으로 변경 또는 복학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일반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자 또는 휴학기간 중 복학을 희망하는 자는 학기 개시일 이전 소정의 복학기간에 복학원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얻어 학적과에 접수시킨다.

② 일반휴학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당해 학기 등록기간 중에 복학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복학원서 1통을 구비하여야 한다.

④ 복학신청 기간 외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 정정기간까지 복학신청을 허용한다.

제50조(군제대 복학) ① 군입대 휴학 자는 군제대 후 1년 이내에 당해 학기 등록기간 중에 복학하여야 한다.

② 군전역 예정일이 개강일을 초과하는 경우 복학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군제대일자가 수업 주 수 1/4이내일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그로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지며 해당자는 소속 부대장의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소집해제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복학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군제대 복학원서(소정서식) 1통.

2. 전역증 또는 입영일/전역일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1통.

⑤ 복학원서를 작성하여 학과(부)장의 승인을 얻어 학적과에 접수시킨다.

제51조(자퇴) 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의 연서로 그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지도교수,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입금을 납부하고 자퇴할 경우는 자퇴일자를 기준으로 납입금을 환불함. 단, 휴학자가 자퇴를 할 경우에는 휴학일자가 기준이 된다.

경과일	환불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일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일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1/3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않음

제52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

① 각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② 휴학기간 경과 후 등록기간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③ 연속3회 성적경고 처분을 받은 자

④ 사망 또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학업을 지속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⑤ 다른 대학(교)에 입학한 자

⑥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제53조(제적통지) 제적처분을 한 때에는 즉시 제적된 자의 소속학과(부)장에게 통지하고, 제적통지서에 의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졸업기준) 졸업사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8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취득학점이 학칙 제44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2. 각 학과별 교과과정에 의한 소정학점을 이수하고 전학년 평점평균이 2.00 이상인 자.
3. 졸업논문(또는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등)을 작성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된 자.
4. 정해진 졸업인증에 통과한 자
5. 그 밖의 복수학위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복수학위제 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55조(졸업) ① 학칙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칙 및 규정에 근거한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졸업을 허가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 졸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게 졸업을 허가한다.

1. 수업연한 이상 등록
 2. 해당 학위과정별 교육과정의 교과목 이수구분별 학점 취득
 3. 졸업이수학점 이상 취득
 4. 전학년 평점평균 2.00이상 취득
 5. 외국어인증제도 요건 충족
 6. 졸업논문 및 졸업시험 합격
- ③ 제2항 제2호부터 4호까지의 요건 중 충족이 안된 경우 졸업탈락이라 한다.
1. 졸업탈락자는 재적을 유지하고, 수학을 통해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졸업탈락자는 학점 당 등록 할 수 있다.
- ④ 졸업탈락자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1. 8회 이상 등록 후 학점미달로 졸업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학기에 등록을 하여 미달된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2. 졸업탈락자는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한다.

수강학점	수업료
3학점이하	당해학기 등록금의 1/6
4학점이상 ~ 6학점이하	당해학기 등록금의 1/3
7학점이상 ~ 9학점이하	당해학기 등록금의 1/2
10학점이상	전액

- ⑤ 제2항 제5호부터 6호까지의 요건 중 충족이 안 된 경우 수료라 한다.
- ⑥ ②항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추가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이 있을 경우 학부(과)의 승인을 거쳐 졸업심사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그 심사를 제외 받을 수 있다.
- ⑦ 휴학 중에는 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졸업할 수 없다.

제56조(졸업유예) ① 신청자격 : 졸업 조건을 충족하여 졸업사정을 통과한 학생으로서 계속 수학하기를 원하는 경우 졸업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가. 학칙 제7조 수업연한을 충족한자
 - 나. 본 칙 제54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한자
- ② 유예기간 : 졸업유예는 학기 단위로 2회까지 할 수 있다.
- ③ 신청시기 :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이후 신청기간내에 졸업유예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유의사항 : 졸업유예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한다.

가. 졸업유예자는 유예 기간 중 휴학 할 수 없다

나. 졸업유예자는 최소 1과목 이상 수강신청 해야 한다.

다. 졸업유예자의 등록금은 본 칙 제7조(등록), 제8조(등록절차)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의 수강학점별 차등납부액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계절학기 수강 시 계절학기 규정에 따라 납부한다.

라. 졸업유예가 확정 된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미등록한 경우 미등록 제적처리 한다.

⑤ 졸업유예가 확정 된 자는 취소할 수 없다.

⑥ 졸업유예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7조(조기졸업) ①조기졸업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6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로서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매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4.00 이상인 자.

2. 재학기간 중 낙제한 과목이 없고 재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이 없는 자.

3. 학칙 제15조 및 제16조에 해당하는 자는 조기졸업 대상이 될 수 없다.

4. 조기졸업 희망자는 최종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조기졸업 희망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조기졸업학기까지 본 칙 제16조에 부합하는 학점 신청 후 취득한 각 학기 평점평균이 4.0이상인자.

6.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7. 계절학기 중 취득한 학점이 없는 자.

② 조기졸업 심사에 탈락한 학생은 다음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58조(후기졸업) 제1학기말에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59조(졸업인증제도) ①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졸업인증제도에서 요구하는 졸업요건을 졸업 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졸업인증제도는 외국어졸업인증제도가 있으며, 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어 졸업인증제 실시에 관한 규정>기준에 따른다.

제60조(종합시험) ①학칙 제64조에 의한 종합시험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종합시험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61조(졸업논문) ① 학칙이 정한 졸업요건에 합당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전공에서 필요로 하는 논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논문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② 졸업논문 제출 자격은 8학기 이상 등록한 졸업예정자에게 부여한다. 다만 조기졸업자는 졸업당해학기에 적용하며, 복수전공 이수자는 전공별 논문을 통과하여야 한다.

③학칙 제65조에 의한 졸업논문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졸업논문시행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10장 진급 및 유급

제62조(진급) 각 학년의 진급은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후 진급할 수 있다.

제63조(유급) 유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유급은 학년단위로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시행한다.
2. 유급된 자는 해당학년에 기 취득한 학점은 무효로 하고, 매년 1학기 개강 전 신청하여 전 교과목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3. 성적은 1, 2학기를 모두 각각 학기별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1.50 미만인 자는 본인이 유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장 전 과

- 제64조(전과)** ① 전과는 2학년 이상 1학기 초에 재학(전과신청 직전학기 휴학하지 않은 자) 중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되 총 신청평점평균이 2.50(C+)이상인 자로 하며 편입생, 재입학생, 조기복학을 통한 학기 불일치에 해당하는 자는 전과를 불허하며, 간호학과 전과, 동일학과(부) 내 주야교차 전과, 학칙(별표1)의 모집단위 내에서의 전공변경 등은 할 수 없다.
- ② 각 학년별 제1, 2학기를 정상적으로 이수하여 매 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인 자만 전과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전과를 지원하는 자는 학과(부)의 입학정원 15%이내에서 소정의 원서에 소속학과(부)장 및 전입할 학과(부)장의 승인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허용한다. 단,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학정원 15%를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④ 전과한 자는 전입학과(부)의 소정 교과목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미 취득한 학점은 전입 단과대학의 학장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⑤ 전과한 자의 재학연한에 관하여는 종전에 재학한 연한을 통산한다.
- ⑥ 전과를 지원하는 자가 많은 경우에는 취득성적(평점평균)순으로 정한다.
다만, 동일성적일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1. 평점합계가 높은 자.
 2. 취득학점이 많은 자.
- ⑦ 전과한 학생은 직전학기의 성적우수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⑧ 전과(부)로 계열이 변경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등록금 차액을 납부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

제12장 부전공, 복수전공, 다전공, 연계전공 및 융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제65조(부전공, 복수전공, 다전공, 연계전공 및 융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학칙 제54조 및 제55조에 의한 부전공제, 복수전공제, 다전공제, 연계전공제, 융복합전공제, 학생설계전공제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전공 운영규정>, <복수전공 운영규정>, <다전공 운영규정>, <융복합전공 운영규정>, <학생설계전공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다만, 연계전공은 학칙 제34조에 의하며 <복수전공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3장 학적 기재사항 정정

제66조(학적부 정정) ① 기초학적자료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사항이 상이하여 정정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적과에 방문 또는 우편, FAX로 학적기재사항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정사항에 따른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 주민등록초본

제14장 계약학과

제67조(계약학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8조(학위과정) 계약학과에는 학사학위과정(이하 “학사과정” 이라한다) 둘 수 있다.

제69조(계약학과의 명칭, 정원 및 학위) ①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학위명은 학칙 『별표3』에 의한다.

② 계약학과의 정원은 산업체 등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한 계약학과의 입학정원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⑤항에 의하여 총입학정의 10% 이내로 하며 개설학부(과)는 가급적 정규과정 개설학과(부)로 한다.

③ 지원자격 및 선발 :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할 수 있는 자는 학칙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 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일부를 담당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3.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선발절차는 학칙과 제 규정에 따르며,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70조(계약학과 개설신청) ① 계약학과 개설 신청은 입학전형 일정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계약학과를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권역은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도 단위)내 또는 대학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10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로 한다.

③ 계약학과는 기획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업체 등과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하며, 운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산업체 등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의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6. 재직 중 퇴직, 인사이동 또는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신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④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산업체와의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

우에는 당해 계약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⑤ 계약학과는 단독 또는 2개이상의 산업체 등과 연합하여 계약 및 설치할 수 있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1조(입학자격) ① 계약학과에 지원하는 자는 산학협력 계약 및 계약학과 운영협약을 체결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만, 편입학은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직원이 계약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 또는 산업체 대표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③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4.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5.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제72조(학기 및 수업일수) 학기 및 수업일수는 학칙을 따른다.

제73조(졸업학점) 졸업학점은 학칙을 따른다.

제74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주말수업,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 학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본교 또는 계약 산업체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수업은 출석수업의 비중을 50%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산업체 등의 임직원 중 교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하여 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 (교육과정의 운영) ① 교육과정의 편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교육과정에 의하여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 과목을 이수한다.

제76조(교육과정 이수 인정) ①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근무경력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은 계약학과 학과장이 학생으로부터 학점인정원을 제출받아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7조(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 계약학과의 설치 운영 기간은 대학은 4년(편입은 2년)이상 원칙으로 하되 계약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8조(운영위원회)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획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다.

제79조(계약학과의 운영) 계약학과의 운영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부) 또는 유사한 학과(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제80조(계약학과의 폐지등) ① 계약학과가 그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은 계약학과의 교육을 위탁받은 학과(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아 과정 이수를 완료토록 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 학생이 계약 산업체 등에서 징계에 의하여 퇴직, 면직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보아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③ 계약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처리하며, 이 때 학생 및 산업체의 부담금 등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계약 기간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 산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하거나 본교에서 계속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교육비 부담) 계약학과의 학생에 대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계약학과 운영비)은 산업체 위탁교육 과정의 책정금액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산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총장이 따로 정하며

①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학생에게 교육비를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②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학생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초과하여 교육비를 부담할 수 없다.

③ 산업체 등이 부담하는 교육비를 일률적으로 대학의 자체 장학금 등으로 감면처리하여 학생이 부담하는 교육비가 전체 운영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토록 할 수 없다.

제8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학칙, 교육과학기술부의 계약학과 운영요령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199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1995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1996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199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199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12월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전과에 대한 경과규정) 세칙 제26조의 개정된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재입학에 대한 경과규정) 세칙 제12조 제6항의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재수강에 대한 경과규정) 세칙 제27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③ (성적평가 및 성적분포에 대한 경과규정) 세칙 제34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전과에 대한 경과규정) 세칙 제6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